

「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인재 선발 및 육성규정」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.

2024년 3월 15일

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



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규정 제192호

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인재 선발 및 육성규정 일부개정

강원특별자치도 미래인재 선발 및 육성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(중전의 제7호) 및 제7호(중전의 제8호) 중 “지원금”을 각각 “장학금 지급”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정”을 “과학기술, 인문사회, 문화예술, 체육”으로, “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”를 “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대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(문화예술 분야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부터 대학교 2학년 학생)”로, 같은 조 제1호 중 “한”을 “두고 있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본인 및 친권자의 등록기준지가 강원자치도이고 강원자치도 내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

제5조제3호 중 “전국단위”를 “직전 하계 및 동계 올림픽 경기종목 중 전국단위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내외” 를 “이내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사장” 을 “원장” 으로, 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” 를 “원장이 한다” 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중 “지원금” 을 “장학금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포상금” 을 “특별장학금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원금” 을 “장학금” 으로 하고,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대 상 자		금 액
초등학생		연 3,000,000원
중 · 고등학생		연 3,000,000원
대학생/대학원생		연 5,000,000원
유학생	미국	연 10,000,000원
	영국	연 8,500,000원
	기타	연 6,500,000원

제12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제2호의 성취 특별장학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분 야	대회규모	1위	2위	3위
과학기술	국제과학올림피아드 등	5,000,000원	3,000,000원	2,000,000원
	아시아권올림피아드 등	3,000,000원	2,000,000원	1,000,000원
	아시아권 공모전 등	3,000,000원	2,000,000원	1,000,000원
인문사회	국제올림피아드 등	5,000,000원	3,000,000원	2,000,000원
	아시아권대회 등	3,000,000원	2,000,000원	1,000,000원
문화예술	국제문화예술경연대회 등	5,000,000원	3,000,000원	2,000,000원
	아시아문화예술경연대회 등	3,000,000원	2,000,000원	1,000,000원
체 육	동 · 하계 올림픽대회, 세계선수권대회(4년) 등	5,000,000원	3,000,000원	2,000,000원
	동 · 하계 아시아경기대회	3,000,000원	2,000,000원	1,000,000원
올해를 빛낸 미래인재		3,000,000원		
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		1,000,000원 범위 내		

④ 제1항 제2호의 격려 특별장학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분 야	대 회 규 모	금 액
과학기술	국제 과학올림피아드 및 학술회 발표 등	1,000,000원
	아시아권 과학올림피아드 및 학술회 발표 등	500,000원
	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 선발전 등	300,000원
	아시아권 공모전 등	500,000원
	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등	300,000원
인문사회	국제 올림피아드 및 학술회 발표 등	1,000,000원
	아시아권 학술회 발표 및 논문 게재 등	500,000원
	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 선발전 등	300,000원
문화예술	국제 음악 및 무용 경연대회 등	1,000,000원
	아시아권 국제예술경연대회 등	500,000원
	국내예술경연대회 등	300,000원
체 육	올림픽, 청소년올림픽 등	1,000,000원
	아시안게임, 세계선수권대회, 유니버시아드 등	500,000원
	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등	300,000원
공 통	각종 대회 및 예술공연 등	100,000원 (특별장학금 및 격려금품)

제13조제1항 제1호 중 “3년(4·5·6학년)”을 “2년(5·6학년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지원기간 7년은 미래인재 장학금 지급횟수 14회를 기준으로 하며, 군 입대 및 질병으로 인해 휴학하는 경우는 총 지원기간(7년)에서 제외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심화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 기간을 포함 최대 7년간 지원할 수 있다.

④ 미래인재로 선발된 자는 최초 평가 이전까지 연속 총 3회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.

제16조를 삭제하고, 제15조를 제16조로 하며,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지원중단 및 지원종료) ① 미래인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재학 중 휴학하였을 경우 휴학기간. 단,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2. 재학 중 군 입대하였을 경우 의무복무기간(단, 복학하는 경우에는 입영직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)
3. 질병치료를 위한 치료기간

② 미래인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.

1. 소속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
2. 선발분야 및 전공(종목)을 변경하였을 때
3.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
4. 지원기간(7년)이 종료되었거나 선발연도 이후 10년이 경과한 때
5. 미래인재 활동실적 평가 시 실적자료 3년 연속 미제출한 경우

제16조(종전의 제15조)제3호 중 “지원금” 을 “장학금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인증서 및 지원증서” 를 “인증서” 로 한다.

제 5장 보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및 제1조를 각각 삭제하고, 제1조를 제2조로 한다.

제1조 중 “날로” 를 “날” 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(생 략)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특성화인재”라 함은 도 및 전 국단위 상업경진대회, 영농학생 축제, 바이오기술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자를 말한다.	<삭 제>
3.“미래인재육성사업”이라 함은 미 래인재에게 재정적·교육적으로 지원·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.	2. (현행과 같음)
4.“재정적 지원”이란 미래인재가 해 당 분야의 자기계발을 위해 소요 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	3. (현행과 같음)
5.“교육적 지원”이란 미래인재가 해 당 분야의 목표성취에 필요한 진 로지도 및 자문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	4. (현행과 같음)
6. “계속지원”이란 미래인재의 재 정적·교육적 지원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.	5. (현행과 같음)
7.“지원중단”이란 미래인재 지원금 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.	6. ----- 장학 금 지급 -----.
8.“지원종료”란 미래인재 지원금 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.	7. ----- 장학금 지 급 -----.
제4조(선발자격) 미래인재는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자질이 있고 장 차 강원특별자치도를 빛낼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공 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	제4조(선발자격) ----- 과학기 술, 인문사회, 문화예술, 체육 --- ----- ----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대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(문화예

는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.

1. 본인 또는 친권자가 강원특별자치도(이하 “강원자치도”라 한다.) 내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한 사람

2. 친권자 또는 본인이 기본증명서의 등록기준지가 강원자치도이고 본인이 강원자치도내에 총 5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사람

제5조(선발분야 및 기준) (생략)

1. 2. (생략)

3. 체육분야에서 전국단위 이상 대회 3위 이상 입상 또는 국가대표로 선발된 사람

4. (생략)

제8조(선발위원회) ① (생략)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인평원 이사와 인재육성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사장이 위촉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1. 2. (생략)

④ ⑤ (생략)

제12조(지원) ① (생략)

1. 해당 분야의 자기계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인 지원금

술 분야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부터 대학교 2학년 학생) -----.

1. -----

--- 두고 있는 ---

2. 본인 및 친권자의 등록기준지가

- 강원자치도 내에 -----
----- 두었던 ----

제5조(선발분야 및 기준)

(현행과 같음)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 직전 하계 및 동계 올림픽 경기종목 중 전국단위 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선발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 이내 -----.

③ -----

----- 원장 ----- 원장이 한다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④ ⑤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
1. -----
----- 장학금

2. 해당 분야에서의 우수한 성과에
따른 포상금

3. 4. (생 략)

② 제1항 제1호의 지원금 지급 기
준은 다음과 같다.

대 상 자		2018년 선발 미래인재까지	2019년 이후 선발 미래인재
초등학생		연 3,000,000원	연 3,000,000원
중·고등학생		연 3,000,000원	연 3,000,000원
대학생/ 대학원생		연 6,000,000원	연 5,000,000원
유 학 생	미국	연 20,000,000원	연 10,000,000원
	영국	연 17,000,000원	연 8,500,000원
	기타	연 13,000,000원	연 6,500,000원

<신 설>

<신 설>

2. -----
---- 특별장학금

3. 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장학금 -----
-----.

대 상 자		금 액
초등학생		연 3,000,000원
중·고등학생		연 3,000,000원
대학생/대학원생		연 5,000,000원
유학생	미국	연 10,000,000원
	영국	연 8,500,000원
	기타	연 6,500,000원

③ 제1항 제2호의 성취 특별장학
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분야	대회규모	1위	2위	3위
과학 기술	국제과학올림피아드 등	5,000,000원	3,000,000원	2,000,000원
	아시아권올림피아드 등	3,000,000원	2,000,000원	1,000,000원
	아시아권 공모전 등	3,000,000원	2,000,000원	1,000,000원
인문 사회	국제올림피아드 등	5,000,000원	3,000,000원	2,000,000원
	아시아권대회 등	3,000,000원	2,000,000원	1,000,000원
문화 예술	국제문화예술경연대회 등	5,000,000원	3,000,000원	2,000,000원
	아시아문화예술경연대회 등	3,000,000원	2,000,000원	1,000,000원
체육	동·하계 올림픽대회, 세계선수권대회(4년) 등	5,000,000원	3,000,000원	2,000,000원
	동·하계 아시안게임 등	3,000,000원	2,000,000원	1,000,000원
	올해를 빛낸 미래인재	3,000,000원		
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		1,000,000원 범위 내		

④ 제1항 제2호의 격려 특별장학
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분야	대 회 규 모	금 액
과학 기술	국제 과학올림피아드 및 학술회 발표 등	1,000,000원
	아시아권 과학올림피아드 및 학술회 발표 등	500,000원
	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 선발전 등	300,000원
	아시아권 공모전 등	500,000원
	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등	300,000원
인문 사회	국제 올림피아드 및 학술회 발표 등	1,000,000원
	아시아권 학술회 발표 및 논문 게재 등	500,000원
	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 선발전 등	300,000원
문화 예술	국제 음악 및 무용 경연대회 등	1,000,000원
	아시아권 국제예술경연대회 등	500,000원
	국내예술경연대회 등	300,000원
체육	올림픽, 청소년올림픽 등	1,000,000원
	아시안게임, 세계선수권대회, 유니버시아드 등	500,000원
	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등	300,000원
공통	각종 대회 및 예술공연 등	100,000원 (특별장학금 및 격려금품)

③ (생 략)

제13조(지원기간) ① (생 략)

1. 초등학교 교육과정 : 3년(4·5·6학년)

2.·3. (생 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석·박사과정 등 심화활동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13조(지원기간) ① (현행과 같음)

1. ----- 2년(5·6학년)

2.·3.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의 지원기간 7년은 미래인재 장학금 지급횟수 14회를 기준으로 하며, 군 입대 및 질병으로 인해 휴학하는 경우는 총 지원기간(7년)에서 제외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심화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 기간을 포함 최대 7년간 지원할 수 있다.

④ 미래인재로 선발된 자는 최초 평가 이전까지 연속 총 3회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.

제15조(지원중단 및 지원종료) ① 미래인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재학 중 휴학하였을 경우 휴학기간. 단,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2. 재학 중 군 입대하였을 경우 의무복무기간(단, 복학하는 경우에는 입영직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15조(미래인재 의무) (생 략)

1. · 2. (생 략)

3. 미래인재 지원금 신청서류의 제출

4. 미래인재 인증서 및 지원증서 수여식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행사의 참여

5. · 6. (생 략)

제4장 특성화 인재

제16조(지원) ①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성화 인재에 대한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② 지원시기는 도대회와 전국대회 종료 후,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과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대상자를 통보받은 날로 30일 이내에 지급한다.

3. 질병치료를 위한 치료기간

② 미래인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.

1. 소속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

2. 선발분야 및 전공(종목)을 변경하였을 때

3.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

4. 지원기간(7년)이 종료되었거나 선발연도 이후 10년이 경과한 때

5. 미래인재 활동실적 평가 시 실적자료 3년 연속 미제출한 경우

제16조(미래인재 의무) (현행과 같음)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장학금 -----

4. ----- 인증서 -----

5. · 6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제 5장 보 칙

제1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해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제2조(규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. 12. 30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종전의 강원인재육성재단과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이 한 행위는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. 12. 30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종전의 강원인재육성재단과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이 한 행위는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(현행과 같음)

(현행과 같음)

(현행과 같음)

(현행과 같음)

제1조(시행일) ----- 공포한 날 -----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해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